

제주지방법원 2020. 2. 17 선고 2018가단1000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강남, 담당변호사 이창주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

변론 종결 2020. 2. 3

판결 선고 2020. 2. 17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대 585㎡ 및 위 토지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66.11㎡, 부속건물 목조 초가지붕 단층 창고 39.66㎡,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26.44㎡,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3.22㎡(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'이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각

1/2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8. 5.9. 접수 제24880호로 마친
소유권일부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등기'라 한다)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2018 . 5. 9. 피고 앞으로 '2018. 3. 26. 증여'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.

○ 피고는 원고의 딸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2지분을 증여한 적이 없다.

피고는 2018. 봄 신장병으로 투석 중인 원고에게 찾아와 '○○아파트를 임차하는데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'고 하였고,원고가 인감도장을 교부하자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고 '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각 1/2지분을 증여한다'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위조한 후 위조된 위 계약서와 대리발급받은인감증명서 등을 신청서류로 제출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 및 위조 서류에 의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.

3. 판단

가.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 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,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주장 · 입증할 책임을 진다(

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5다39526판결 등).

나. 이 사건 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거나, 위조된 서류에 의한 무효의 등기 라고 볼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, 갑 제4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나 이 법원의 ○○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.

다. 오히려 을 제2호증의 3(을 제3호증의 4와 같다)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법무사 E 사무소의 사무장 D가 2018. 3. 26. 피고로부터 이 사건 등기 신청업무를 의뢰받고 같은 날 13:00경 원고가 입원한 ○○대학교병원 F호 병실을 방문하여 원고의 증여의사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의 확인서면에 원고로 하여금 "본인은 위 등기위무가와 동인안임을 한인합니다"1) 라는 문구와 원고의 성명을 자필로 각 기재하도록 하고 우무인을 찍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

위 나.항에서 배척한 증거들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현룡

1) 원고는 '등기의무자'를 '등기위무가'로, '동일인'을 '동인안'으로, '확인합니다'를 '한인합니다'로 각 오기하였다.